

방사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칙

제정 2011. 7. 27

제 1 조(목적)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의료원(이하 “의료원”이라 한다)내의 방사선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 장치의 취급관리, 근무자의 안전 및 사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원 방사선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2. 방사선 피폭으로 인하여 장해를 받은 근무자 및 환자의 치료에 관한 사항
3. 방사선동위원소와 방사선 발생장치의 이용에 수반하는 방사선 장애방어에 관한 사항 및 이용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
4. 방사선실무위원회 건의사항
5. 기타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3 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보좌기구로 방사선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으며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사선 사용부서 실무책임자로 한다.
3.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

제 4 조(위촉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의료원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은 의료원장이 위촉하며 병원과 의과대학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에는 병원과 의과대학에 각각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간사로 둔다.

제 5 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보조한다.

제 6 조(회의의 소집 및 심의) ① 회의는 의료원장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 7 조(회의록 및 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며 중요한 사항은

의료원장에게 보고한다.

제 8 조(보 칙)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2. (폐 지)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「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운영세칙」은 폐지한다.